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입주기업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03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최종학력 기준)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3).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3(입주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주변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역인재”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현행	개정안
	<u>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입주기업체의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입주기업체의 채용규모 및 주변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인재 또는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300명 이상의 기업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받고 있음.

[표 2]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구분	지방대육성법	혁신도시법
지역인재 범위	<u>비수도권 대학</u> (원격대학·각종 학교 제외)의 학생 또는 졸업생	<u>이전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u> 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단, 최종학력 기준)
채용비율 및 의무화 여부	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u>300명 이상 기업</u> → <u>일정 비율 이상 채용 노력</u> ②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 35% 이상 의무채용(단, 소규모, 전문·특수인력 채용 제외)	이전공공기관등(비수도권) → 일정 비율(공공기관 30% 기준) 이상 채용 의무

이러한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선순환을 발생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특히 「지방대육성법」은 300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35%)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홍보,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표 3] 지역인재 우수 채용기업 지원사항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대육성법」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안은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에 입주한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인재의 범위를 「혁신도시법」과 같이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되, 고등학교 졸업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조세감면¹⁾이나 자금지원²⁾ 등의 혜택을 받는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입주기업체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민간기업의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할당하는 것은 개별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업 규모(상시근로자 수), 1회 채용시 규모, 특수·전문인력 수요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필요한 인적 역량을 적시에 충원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非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라 일정 비율 채용을 할당하는 것도 헌법상 차별금지 및 「고용정책 기본법」상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원칙³⁾ 부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⁴⁾.

문 의 처
02)6788-5456

3)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참고로 2014년 청년 할당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고용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연령차별금지는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위헌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음.

*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

**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위헌5명, 합헌4명)이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하였음.

참고

지역별 산업단지 분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산업단지 수					입주 업체 수	고용인원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합계		
서울	1	3	-	-	4	15,558	182,838
경기	5	179	14	1	199	37,425	586,784
부산	1	32	5	1	39	8,292	125,004
대구	1	16	3	4	24	10,048	116,463
인천	2	14	2	-	18	14,284	151,554
광주	2	9	2	1	14	5,145	67,470
대전	1	3	2	-	6	3,058	47,001
울산	2	25	1	4	32	2,394	137,897
세종	1	13	1	4	19	193	12,498
강원	1	26	6	49	82	2,181	32,803
충북	3	92	3	44	142	3,270	124,361
충남	6	75	3	94	178	3,210	152,059
전북	5	32	1	69	107	3,923	84,023
전남	7	79	1	67	154	3,995	87,122
경북	7	79	1	67	154	6,248	170,025
경남	10	117	2	81	210	7,814	283,647
제주	2	1	-	3	6	270	4,532
합계	52	739	47	482	1,320	127,038	2,361,549

※ 2024. 3분기 기준